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71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0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임미애 · 박희승
남인순 · 전종덕 · 전진숙
이건태 · 김현정 · 김문수
추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·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·신탁,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, 증권의 매매·대여 등을 규정하면서,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기금을 관리·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,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방식 외에 사모투자, 부동산 투자,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투자를 하고 있음. 그런데 이러한 대체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대체투자 시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요소 고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.

또한 현행법은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요소의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동시

에 대상을 확대하고, 기금운용지침에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·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02조 및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).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2항제3호”를 “제2항제1호·제3호·제7호”로, “고려할 수 있다”를 “고려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7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
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

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 요소의 고려 기준
및 방법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적용례) 제102조제4항의 개정규정
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2조제2항제1호·제3호·제7호에 따라 예입
·신탁·투자·융자·매매·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7. (생략) ③ (생략)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. ⑤ · ⑥ (생략) 제105조(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)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(이하 “기금운용지침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략) <신설> ② (생략)	8. (현행 제7호와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2항제1호·제3호·제7호- ----- ----- ----- ----- 고려하여야 한다.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 제105조(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· 사회·지배구조 등 요소의 고 려 기준 및 방법 ② (현행과 같음)
--	--